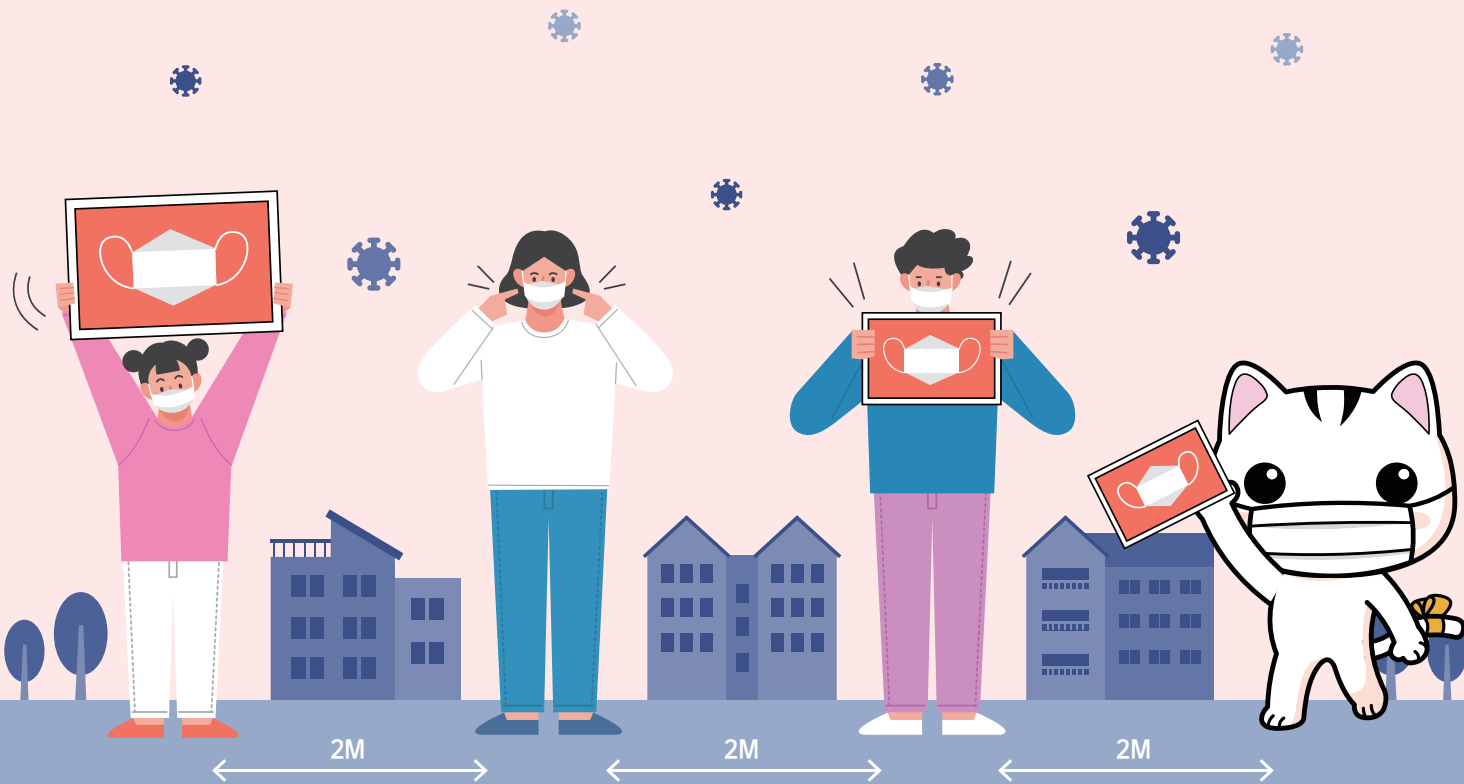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 사적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동참

지난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직장이나 각종 소규모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매일 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고위험군 시설 합동점검 등 다양한 대처로 이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글·사진 편집부



## 고양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는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개방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자인메디병원, 일산복음병원, 17개소 1차 의료기관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총 21개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으로 의료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환자의 선별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당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보건소에 설치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접수실, 진료실, 검체 채취실로 구성돼 공간 분리와 음압설비, 비말 차단 등 환경요건이 적용됐다. 의사 1명, 간호 인력 1명, 행정 및 소독 담당 2명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상근하며 관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해 진료를 진행한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별도 처방도 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동일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

1차 의료기관에는 음압기가 설치되고 의료진 보호구가 제공된다. 접수대와 진료실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자동 손소독제 분사기, 비대면 체온계, 비대면 청진기가 제공된다.

일산서구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는 11월 16일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지속 발생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사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사용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정상 영업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 금지 지침을 지켜야 한다. PC방도 동일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안 된다. 종교행사의 참여 좌석수는 20%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로 줄어든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허용한다.



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



다중이용시설 방역실태 점검

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이후 매일 아침 재난안 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업교, 박애원, 화중초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기에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젊은 층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클럽, 번화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클럽 등 고위험시설 182개소뿐만 아니라 화정 로데오거리,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수길 등 번화가 주변 음식점 150개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길거리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11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등 학생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노래연습장은 음식물 섭취 금지, 이용한 룸 바로 소독 시행,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을, PC방은 다른 일방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등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5단계로 세분되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명에서 천 명 이상 등 1주일 동안의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지표가 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 150㎡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공연장 등 14개 시설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권고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출처 보건복지부

#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지역 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b>개념</b>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b>기준</b>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b>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b>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b>준수사항</b>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b>마스크 착용 의무화</b>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b>모임·행사</b>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b>스포츠 관람</b>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b>교통시설 이용</b>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b>등교</b>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b>종교활동</b>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b>직장근무</b>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